

The
Software
Alliance

BSA

2018 KOREA REPORT

밝은 미래를 위한 동력

galexia



국가 : 한국

점수 : 72.2 | 순위 : 12/24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촉진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한국의 제반 법률과 표준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스코어카드 상에서 볼 때, 한국은 IT 준비도 및 광대역 배치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정비된 개인 데이터 보호 법률을 갖추고 있지만, 복잡하면서 유연하지 못한 통지 및 동의 요건을 시행하고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지적 재산권 법률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시행 및 집행은 일부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즉, 한국의 사이버 범죄 법률은 관련 문제의 전체 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자유 무역과 정보 처리 상호 운용의 적극적인 주창 국가이자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 무역 기구 협정(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우려 사항은 한국이 적절한 국제적 암호화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보 기술(IT) 보안 기기 및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국내 암호화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미 정보 기술 보안 평가를 위한 국제적 공통 기준을 통과한 일부 IT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현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스코어카드 순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2016년과 크게 변동된 바가 없다.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데이터 보호 (점수: 9.5/12.5 순위: 11/24)		
1. 데이터 보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한민국의 사생활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데이터 보호 법률인 개인 정보 보호법(PIPA)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개정되었다. 개인 보안 조치 표준(Standards of Personal Security Measures)이라는 제목의 표준들은 2015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원하고 있고 이 법률 내에 존재하는 차이나 단점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데이터 보호 법률이나 규정의 범위 및 적용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포괄적	이 개인정보 보호법(PIPA) 2011은 포괄 입법으로 모든 부문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3. 데이터 보호 당국이 운영 및 설립되고 있는가?	✓	한국의 사생활 보호 규제 구조는 복잡하며, 주요한 단속 기관은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ww.mois.go.kr>이다.
4. 데이터 보호 당국의 성격은 무엇인가?	기타 첨부 관료	한국의 사생활 보호 규제 구조는 복잡하며, 일부 기관들이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한 단속 기관은 행정안전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ww.mois.go.kr>이다. 또한, 한국 인터넷 진흥원(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내에 있는 사생활 보호 센터 <privacy.kisa.or.kr>가 지침과 표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 감독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PIPC) <privacy.kisa.or.kr>가 담당하고 있다.
5. 데이터 보호 당국을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데이터 보호 법률이나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가?	✓	2014년에 있었던(대량의 신용카드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주요한 데이터 위반 사건 이후 한국의 사생활 보호 법률의 집행 사례가 크게 늘었다. 광범위한 민사 및 형사 벌칙과 제재를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1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PIPC) <www.pipc.go.kr>에서 위원회 자체 집행 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약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로 설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3차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6. 데이터 보호 법률이나 규정이 국제적인 데이터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프레임 워크와 부합하는가?	APEC 프레임워크 및 EU 프레임워크	<p>핵심적인 사생활 보호 원칙들은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EU 지침 및 OECD 지침이 혼합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적인 보안 조치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데이터 취급자 개념은 EU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자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2017년 1월, 유럽 위원회(EC)는 EU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에게 “적격”의 지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 한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이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 조건 없이도 한국으로 개인 데이터가 이전될 수 있게 된다.</p> <p>한국은 APEC 회원국이므로 이 법률은 APEC의 사생활 보호 프레임워크에 부합한다. 2017년 1월, 한국은 APEC의 국가간 사생활 보호 규정 계획(CBPRs) <www.cbprs.org>에 대한 공식 참여 국가가 되고자 신청한 바 있다.</p>
7. 데이터관리자의 등록 요건이 존재하는가?	✓	한국의 사생활 보호 법률에는 등록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8. 국가간 데이터 이전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세부 요건	<p>한국의 국가간 데이터 이전 요건은 복잡하다. 이들 요건은 몇 가지 입법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PIPA) 2011 • 정보 통신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네트워크 법률) 2001(2016년 개정) •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UPCIA) 2013 <p>이 규정들은 이전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이전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외부로 이전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이전 형태에 대한 고지 및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p>
9. 국가간 데이터 이전이 국내 또는 부문 특유의 데이터나 서버의 현지화 요건과 같은 임의적이고 정당하지 못하거나 불균형적인 제한은 없는가?	①	국가간의 데이터 이전에 대해 한국은 복잡한 고지 및 동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전의 법률적 근거는 대부분 사전 동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법률은 다양한 재판 관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대안적 장치가 부족하다.
10. 개인 데이터 위반에 대한 통지 법률이나 규정은 존재하는가?	✓	<p>데이터 위반에 대한 주요한 고지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법(PIPA) 2011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요건들은 보안에 취약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데이터 위반 고지 요건도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APICNUIP) 2001(2016 개정)에 규정되어 있다.</p> <p>클라우드 컴퓨팅 개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한국 클라우드 법)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위한 데이터 위반의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2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PIPA의 일반 요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한다.</p>
11. 개인 데이터 위반에 대한 고지 요건이 투명하고 위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행적 규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은가?	①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데이터의 주체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석과 완화 노력의 우선순위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데이터 주체의 수가 10,000을 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규제 당국에도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항상 해당 사고의 심각성과 데이터 주체들에게 미치는 위해의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데이터의 보호 위반 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 권리가 존재하는가?	✓	<p>특정 사용자가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해당 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공자가 침해 의사가 없거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부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p> <p>손해 배상 청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 <www.kopico.go.kr/main/main.do>에 청구할 수 있다.</p>
보안(점수: 7.5/12.5 순위: 15/24)		
1.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p>2011년에 한국통신위원회(KCC)에서 국가 사이버 보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ccdcoe.org/sites/default/files/strategy/KOR_NCSS_2011.pdf></p> <p>이는 국가정보원(NIA)과 여러 부처에 추가 권한을 인가하는 국가방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계획이다.</p> <p>또한,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eng.nis.go.kr/EID1_7_1.do>를 설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p>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2.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현재 진행형이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가?	①	이 전략은 포괄적이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정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를 설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추가로 사이버-보안 조치를 개발 및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ng.nis.go.kr/EID/1_7_1.do>
3.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반 보안 요건이 규정된 법률이나 관련 지침이 존재하는가?	①	한국에는 일반 보안 요건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법령이 적용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경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보호 조치 요건이 존재한다. 또한,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의 활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01(2016년 개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네트워크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제45조) 집적되고 있는 정보 및 전기통신 시설의 보호.(제46조)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점검.(제46-3조) 정보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인증.(제47조)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침해 사건의 원인 분석.(제48-4조)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발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제23-2조(신뢰성 향상)에서는 미래과학기술장관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표준과 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보호를 위한 관리적, 물리적 및 기술적 조치 포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이 표준들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안 요건 관련 법률이 투명하고 위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행적 규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은가?	①	네트워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세한 보안 규정들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안 요건은 포괄적이지는 않다. 또한, 보안 요건은 관행적 규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결과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5.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감사 요건이 포함된 법률이나 관련 지침이 존재하는가?	①	보안 감사 요건이 포함된 구체적인 법률이나 관련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의 활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네트워크 법) 2001(2016 개정) 제47조는 정보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국제 보안 표준, 인증 및 시험이 현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①	한국은 공통기준인증협약(CCRA) <www.commoncriteriaportal.org>의 인증 권한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회원국이다. 2011년 이후,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들의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통 기준에 의해 인증된 보안 제품들에 대한 보안 입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들은 현지에서 인증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2014년에 모든 중앙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보안-적합성 시험 요건을 국제적인 공통 기준에 의해 인증된 네트워킹 제품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 정책을 모든 공공기관, 지방 정부 및 기타 교육 기관과 같은 정부 관련 기관들로 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CCRA의 회원국이므로 인증을 받은 연구소로부터 획득한 국제적인 인증을 인정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 추가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IT 제품들과 보호 프로파일을 이종으로 평가하는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CCRA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곤란한 것은, 다른 정부 기관을 위해 조달 및 입증 절차가 이루어진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각 정부 기관들에게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적합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국제적인 정보 보안 제품들에게만 공공 조달 분야의 보안 시험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외국상품에 대한 국내적 대우와 차별 금지에 국제적으로 기여해온 한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서면으로 공식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써 해당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정보원(NIS)<nis.go.kr>은 한국 IT 보안 평가 및 인증 계획(KECS) <itscc.kr>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증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국방 및 정보 관련 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 2017년에는 국제적인 보안 표준을 이용하는 지방 시험 센터가 문을 열었다. <english.msip.go.kr/english/msipContents/contents.do?mld=Mjc0>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사이버 범죄 (점수: 8/12.5 순위: 20/24)		
1.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정보 통신 네트워크 활용의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01(2016 개정)(네트워크 법)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제48-1조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접근 권한을 벗어나서 정보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49조는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가공, 저장 및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2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절도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사이버 범죄 법률이나 규정들이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부합하는가?	✗	한국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약에 맞추어 긴밀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다.
3. 데이터에 대한 법률 집행 접근에 관한 현지 법률 및 정책들이 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기술에 따른 권한이나 기타 장벽들을 회피하고 있는가?	ⓘ	전자 상거래에 관한 기본법 2002(개정 2009) 제14-2조는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호화 기술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본이나 암호화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접근을 위한 법률 집행 요구가 일반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인 동기에 기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2016년 세간의 이목을 끌던 한국의 정치 스캔들이 휩쓸던 기간 동안, 정부가 법률 집행 당국에 정부를 비판하고자 사용되고 있던 문자 서비스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가장 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업체는 바로 3일 후에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개인적 통신에 대한 법률 집행상의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보안 기술을 지시하는 제안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4.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위해 국가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	한국은 다수의 상호 법률 지원 협정(MLATs)을 두고 있다.(2017년 6월 현재 73개) 또한, 한국은 조사 당국들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비롯하여 이와는 다른 광범위한 쌍무적인 지역 협약을 이용하고 있다. < www.spo.go.kr/eng/public/activities/activities03.jsp >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지적 재산권 (점수: 10.8/12.5 순위: 5/24)		
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표준과 부합하는 저작권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한국은 자체 지적 재산권 법률에서 국제 표준을 시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과 같은 중개인들을 위한 저작권 “피난처” 조항이 한국 저작권법 2003 제102조에 포함되어 있다.
2. 저작권 법률이나 규정이 효과적으로 집행 및 시행되고 있는가?	①	한국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허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형법 시행의 활용 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국에서 저작권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적 집행 수단 역시 효과가 제한되어 있고 법원들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증거 보존 명령을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민사적 손해배상 결정은 흔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권리 보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지적 재산권 상의 “피난처”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접근방법은 중개인이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를 포기하거나 감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 조항과는 약간 다르다.
3. 영업비밀의 남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보호수단이 존재하는가?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법 2001(2011 개정)은 한국에서의 영업 비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4.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한국은 2012년에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영업 비밀 보호 센터 <www.tradesecret.or.kr>를 설립하였다. 또한, 한국은 영업 비밀 인증 서비스 기관을 설치하여 소유권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분쟁에 사용하기 위해 영업 비밀의 암호화와 타임 스탬프(time-stamp)를 지원하고 있다.
5. 기술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보호수단이 존재하는가?	✓	한국의 저작권법은 작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2003년)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의 보호를 위해 개정되었다.(2011년)
6.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한국은 우회 장치의 개발업자와 유통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효과적인 과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7.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발명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로 가능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품들에 대하여 한국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인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은 컴퓨터 관련 발명품에 대하여 2014년도에 한국 특허청(KIPO) <www.kipo.go.kr>이 발간한 심사 기준으로 보완이 되었다.
8.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발명품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컴퓨터 관련 발명품에 대한 심사 기준 2014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컴퓨터 시행되는 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a) 기구(장치) (b) 공정(방법) (c)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매체(예: 디스크) (d) 매체에 저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2014년 7월에 추가)
국제 표준 및 국제적 조율 (점수: 9/12.5 순위: 16/24)		
1. 국가의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가?	✓	국가기술표준원(KATS) <www.kats.go.kr>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표준의 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비 정부 기관이다. 또한, 이 기관은 국제적인 표준의 채택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표준 정보센터 <standard.go.kr>는 제 표준을 발표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국제 표준이 국내 표준보다 선호되고 있는가?	①	한국은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이 혼합된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표준이 우선권을 가지는 몇 가지 ICT 표준 사례가 있다. 현재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적절한 국제 암호화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ICT 보안 장치와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해 국내 암호화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정보 기술 보안 평가를 위한 국제 공통 기준에 합격한 일부 ICT 제품들도 한국에서는 추가로 현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발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한국 클라우드 법)는 관련 부처 장관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제 표준(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표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한국이 이와 같은 입법 하에서 현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3. 정부가 국제 표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한국은 관련 국제 표준 기구(ISO) 및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표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ISO의 정규 회원국이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ICT 표준 위원회(JTC-1)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www.iso.org/isoiec-jtc-1.html>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4. 전자 상거래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전자 상거래에 관한 기본법 2002(2009년 개정)에는 포괄적인 범위의 전자 상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5. 전자 상거래 법률이나 규정이 어떤 국제적인 수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전자 계약 체결에 관한 UN 협약	전자 상거래에 관한 기본법 2002(2009년 개정)에는 전자 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의 핵심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전자 계약 체결에 관한 UN 협약의 서명국이기도 하다.
6. 전자 서명에 명백한 법률적 비중을 부여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존재하는가?	✓	디지털 서명법 1999(2017년 개정)에서는 전자 서명을 인정하고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인가를 받은 전자 서명은 정부가 허가한 인증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전자 서명은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디지털 서명법은 허가를 받은 인증 당국이 반드시 지정된 자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강제적인 여과 과정이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인터넷 콘텐츠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 활용의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네트워크 법) 2001(2016년 개정)에 의해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1991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제된다. 이 법률은 공익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데이터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외설, 명예훼손, 폭력 또는 잔인성 및 도박을 부추기는 등의 불법적인 내용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한국 통신 표준 위원회(KCSC) <www.kocsc.co.kr>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 인터넷 안전 위원회(KISCOM) <www.kiscom.co.kr>가 제한된 내용에 대하여 ISP가 받는 지시사항을 규제하고 발령한다.

자유 무역의 촉진 (점수: 7.5/12.5 | 순위: 13/24)

1.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나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는가?	✓	미래과학창조부(MSIP)는 2015년 말에 K-ICT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 <english.msip.go.kr/english/ 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lid=msse44&artid=1289190> 이 계획에는 한국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5년에 3%에서 2018년까지 30%로 확대하는 정부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책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한국 클라우드 법)에도 정보 처리 상호 운용에 대한 책무와 함께 대형 및 소형 클라우드 판매업체들 간의 경쟁에 관한 일부 제한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촉진에 관한 절(節)이 포함되어 있다.
2. 정부의 기술적 중립성을 실행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존재하는가?	✗	한국은 아직 정부 조달에 있어서 기술적 중립성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특정 제품, 서비스, 표준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해 특혜를 지시하거나 부여하는 법률이나 정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는가?	✗	한국은 적절한 국제적 암호화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CT 보안 장치와 관련 장비의 조달을 위한 국내 암호화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판매자, 개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국적에 근거를 두고 차별하는 법률, 조달 정책 또는 면허 규정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는가?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과 관련된 국내 공급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인정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한국 클라우드 법)에는 실제로 대형 클라우드 판매 업체와 소형 클라우드 판매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 촉진에 관한 높은 수준의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예: 불공정 계약 조건의 금지)
5. 국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조달이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적인 계약에 서명했는가?	📌	한국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정부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정의 정규 회원국이다. <www.wto.org/english/tratop_e/ gproc_e/gp_gpa_e.htm>
6. 클라우드 제공자가 인도하는 서비스가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한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제품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데이터의 현지화 요건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는가?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한국 클라우드 법)는 해당 부처 장관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제 표준(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표준)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한국이 이 법령 하에서 현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을 택할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표준이 사실상 데이터의 현지화 요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2017년 6월 현재 이에 대한 요건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정보의 매핑(mapping)과 관련하여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일부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요건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벽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IT 준비도, 광대역 배치 (점수: 19.9/25 순위: 3/24)		
1. 국가적인 광대역 계획이 존재하는가?	후속정보 마스터 플랜으로 광범위한 FttH/B 인프라를 갖춘 유비쿼터스 고속 광대역을 마련하였다. 현재 다수의 ICT 전략은 ICT 생태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2009년에 한국 통신 위원회(KCC)는 2012년까지 1Gb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목표를 가지고 UBcN(초광대역 통합 네트워크)의 개발을 발표하였다. <eng.kcc.go.kr/user.do?mode=view&page=E02010500&dc=E02010500&boardId=1051&cp=1&boardSeq=15661></p> <p>2014년 1월, 한국은 2020년까지 완전한 상업적 서비스 운용을 목표로 5G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1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p> <p>한국은 유비쿼터스 광대역을 갖추고 있으므로 미래과학장조부는 혁신 투자 전략 개발을 위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광대역의 이용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의 개시와 사물간 인터넷(IoT)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가상 현실(VR)과 같은 문화적 경제 기술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p>
2. 국가적인 광대역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p>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인당 광대역 서비스 수를 보이고 있다. 20년에 걸친 국가 정보화 마스터 플랜을 추진한 결과, 2015년까지 대략 가정의 95% 정도가 광대역 가입자들이었다. 광대역 가입자들 중 60% 이상이 FttH 또는 아파트 LAN을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p>
3. “망 중립성”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존재하는가?	제한적인 규제	<p>한국은 명시적으로 망의 중립성을 다루는 몇 가지 지침을 내놓았다.</p> <p>예를 들면, 2013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MSIP)에서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교통의 규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추가로 업데이트했다.</p> <p>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은 인터넷 접근 서비스에 적용된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인터넷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통량 관리는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
4. 기초 지표		
4.1. 인구(백만)(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총 인구 수: 47억	50	<p>2015년, 한국의 인구는 0.5% 증가하였다.</p> <p>[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p>
4.2. 도시 인구(%) (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평균: 73%	82%	<p>2015년 한국의 도시 인구는 0.1% 증가했다.</p> <p>[세계 은행, 데이터 카탈로그, 지표, 도시 인구(2017년 1월) <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p>
4.3. 가구 수(백만)(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총 가구 수: 12억 4천 9백만 가구	19	<p>2015년 한국의 가구 수는 0.5% 증가했다.</p> <p>[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p>
4.4. 인구 밀도(평방 km 당 인구)(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평균: 471명	519	<p>2015년, 한국의 인구 밀도는 0.4% 증가했다.</p> <p>[세계 은행, 데이터 카탈로그, 지표, 인구 밀도(2017년 1월) <data.worldbank.org/indicator/EN.POP.DNST>]</p>
4.5. 1인당 GDP(미화 달러)(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평균: 미화 22,649달러	\$27,222	<p>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6% 증가하여 미화 27,222달러가 되었다.</p> <p>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4.2%보다 낮은 것이었다.</p> <p>이로써 한국은 1인당 GDP 가액에서 10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 4위에 올랐다.</p> <p>[세계 은행, 데이터 카탈로그, 지표: 1인당 GDP, 현재 미화 \$(2017년 1월) <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및 GDP 성장률, 연간 %(2017년 1월) <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p>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4.6. ICT 서비스 수출 (미화 십억 달러)(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들의 총 수출: 미화 9,780억 달러 	\$23	2015년, 한국의 ICT 서비스 수출가액은 4.8% 감소해서 미화 228억 1천만 달러가 되었다.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12.5%보다 낮은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ICT 서비스 수출가액에서 12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 4위에 올랐다. [세계 은행, 데이터 카탈로그, 지표: ICT 서비스 수출 미화 달러(2017년 1월) <data.worldbank.org/indicator/BX.GSR.CCIS.CD>]
4.7 개인 컴퓨터(가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63% 	77%	2015년 한국 총 가구수의 77.1%가 개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14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 대상 236개국 중에서 40위에 올랐다. 2014년 대비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1.2%보다 더 낮은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개인 컴퓨터 수(가구수 %)에서는 10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24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5. IT 및 네트워크 준비도 지표		
5.1. ITU, ICT 개발 지수(IDI)(2016) (점수는 10점 만점이고, 17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6.58 	8.84	한국의 2016년 ITU, ICT 개발 지수(IDI)는(10점 만점에서) 8.84점이었고, 이로써(175개국 경제 중에서) 1위에 올랐다. 2016년 한국의 IDI는 0.7% 증가했으며, IDI 순위는 2015년 이후 동일한 위치를 지속했다. 이로써 한국은 ITU, ICT 개발 지수에서는 1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24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정보화 사회의 측정(2016년 12월) <www.itu.int/net4/ITU-D/idi/2016>]
5.2. 세계 경제 포럼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NRI)(2016)(점수는 7점 만점이고, 139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4.77 	5.57	한국은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NRI)에서(7점 만점에) 5.57점을 받아(139개국 중에서) 13위에 올랐고, OECD 고소득 경제 국가(32개국 중에서) 11위에 올랐다. 2016년 한국의 NRI는 0.8%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로는 12위에서 1계단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ITU, ICT 개발 지수에서는 5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19위에 올랐다. [세계 경제 포럼, 전 세계 정보 기술 보고서(2016) <reports.weforum.org/global-information-technology-report-2016>]
6. 인터넷 이용자와 국제적인 대역폭		
6.1. 인터넷 이용자(백만)(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총 인원수: 23억 3천만 명 	45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6.2. 인터넷 이용자(인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67% 	90%	2015년에는 한국 인구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19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2.4% 증가한 것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에서 3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22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주의: 국가들이 이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하여 — 예를 들면 16세부터 72세까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6.3. 국제 인터넷 대역폭(국가당 초당 총 기가 비트 수(Gbps))(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총 수: 117,736 Gbps 	2,091	한국은 2014년 이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을 11%까지 증가시켜서 2,091 Gbps가 되었으며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22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의 성장률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복합 성장률(CAGR) 34.3%를 밀도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총 국제 인터넷 대역폭에 있어서 16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9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6.4 국제 인터넷 대역폭(인터넷 이용자당 초당 비트 수(bps))(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97,747 bps	46,894	한국의(인터넷 이용자 당)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2014년 이후 8% 증가했다. 2014년 이후의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복합 성장률(CAGR) 31.8%를 밀도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이용자 당 국제 인터넷 대역폭에 있어서 15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6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7. 고정 광대역		
7.1.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백만)(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의 모든 국가의 총 수: 6억 9천 7백만 명	20	한국은 2014년 이후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가 4% 증가했으며,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9위에 올랐다. 2014년 이후의 성장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복합 성장률(CAGR) 3.1%를 웃도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에서 9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21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7.2. 고정 광대역 가입 가구 수(가구 수 %)(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의 모든 국가의 평균: 63%	104%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주의: 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상의 용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7.3.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인구 %)(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의 모든 국가의 평균: 21%	40%	한국은(인구의 %로서)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가 2014년 이후 3.8%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복합 성장률(CAGR) 2.6%를 웃도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12위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인구의 %로서)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에 있어서 2위에 올랐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CAGR)에서는 22위에 올랐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아래의 OECD 수치는 2016년 6월 현재의 한국의 고정 광대역 연계 유형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OECD에서 한국은 인구의 백분율로서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에 있어서(35개국 중) 5위에 올랐다. [OECD 광대역 가입자(2017년 2월) <www.oecd.org/sti/broadband>] • DSL: 2.6% • 케이블: 8.4% • Fiber/LAN: 29.1% • 위성: 0.0% • 고정 무선: 0.0% 총: 40.1%(2천 3십만 가입자)로서 2016년 6월 현재 OECD 총 평균 29.8%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DSL 및 케이블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광섬유 접속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정 광대역 성장률은 2.27%로서(성장률에 있어서 35개국 중 27위) OECD 평균 성장률 3.42%를 밀도는 수치이다. 한국은 광섬유가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의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35개국 중 2위),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20.1%를 현저히 웃도는 수치이다. 일본과 한국은 OECD에서 광섬유 연결을 독점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OECD 내의 다른 국가의 침투 수준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광섬유 가입자 수의 증가는 9.0%였으며(성장률에 있어서 35개국 중 30위를 차지),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15.94%를 밀도는 수치이다. 주의: 2015년 7월부터 OECD는 위성 및 고정 무선 범주를 모바일로부터 고정 광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정 및 모바일 광대역에 대한 정의를 조정한 바 있다. 주의: 광섬유 가입자 수에 대한 데이터에는 FttH, FttP 및 FttB 등이 포함되며 FTTC는 제외된다. 주의: 정의나 시간의 차이로 인해 ITU 및 OECD 구독자 총수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7.4. 고정 광대역 가입자 수 (인터넷 이용자 %)(2015)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모든 국가의 평균: 29%	45%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7.5. 평균 광대역 데이터 접속 속도(국가 당 초당 총 메가바이트(Mbps)(2017년 1/4 분기)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12 Mbps •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최고치: 70 Mbps	29	한국에서는 2017년도 1/4분기에 평균 광대역 데이터 접속 속도가 28.55 Mbps였으며, 이는 아카마이(Akamai)가 측정한 23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 스코어카드 상 평균 광대역 데이터 접속 속도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2017년도 1/4분기 추가 접속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평균 최고 광대역 접속 속도: 121.03 Mbps(전 세계적으로 6위이며, 이 스코어카드 상으로 2위를 차지함) • 4 Mbps 이상: 98%(전 세계적으로 4위이며, 이 스코어카드 상으로 1위) • 10 Mbps 이상: 85%(전 세계적으로 1위이며, 이 스코어카드 상으로 1위) • 15 Mbps 이상: 69%(전 세계적으로 1위이며, 이 스코어카드 상으로 1위) • 25 Mbps 이상: 40%(전 세계적으로 1위이며, 이 스코어카드 상으로 1위) [Akamai, 인터넷 상태(2017년 1/4분기) < www.akamai.com/us/en/about/our-thinking/state-of-the-internet-report/ >]
8. 광가입자망(FttX)		
8.1. 광가입자망(FttX) 인터넷 가입자 수 (백만)(2015) • 이 스코어카드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총 가입자 수: 2억 5천 8백만	14.3	한국은 2014년 이후 FttX 가입자 수가 9% 증가하여 1,427만 5천명에 달했으며,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FttX 가입자 수에서 4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2014년 이후) 성장률에 있어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8.2. 광가입자망(FttX) 인터넷 가입자 수의 비율(가구 %) (2015) • 이 스코어카드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18%	73.8%	한국은 가구당 FttX 가입자 비율이(2014년 이후) 9%인 73.83%까지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가구당 FttX 가입자 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2014년 이후) 성장률에 있어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주의: 이는 일부 국가에 있어서 사업상의 용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8.3. 광가입자망(FttX) 인터넷 가입자 수의 비율(고정 광대역 가입자 %)(2015) • 이 스코어카드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23%	71.3%	한국은 고정 광대역 가입자에 대한 FttX 가입자 비율이(2014년 이후) 9%인 71.29%까지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고정 광대역 가입자에 대한 FttX 가입자 수에서 2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2014년 이후) 성장률에 있어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9. 모바일 광대역		
9.1. 셀룰러 이동통신 가입자 수(백만)(2015) • 이 스코어카드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총 수: 48억 2천 3백만 명	59	한국은 2014년 이후 셀룰러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2.9%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3%를 밀도는 것이다. 한국은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인구의 118%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국은 셀룰러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서 18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에 있어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 주의: 이 수치는 인구 1인당 복수 가입자로 인해 부풀려질 수 있지만, 이동통신 광대역 전용 장치는 제외된다.(예: 3G 데이터 카드, 태블릿 등)

# 한국	반응	설명 내용
<p>9.2. 활동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백만)(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총 수: 25억 6백만 명 	55	<p>2015년, 한국은 활동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가 2%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2.9%를 밀도는 것이다. 한국은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p> <p>이로써 한국은 활동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에 있어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p> <p>[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p>
<p>9.3. 활동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인구 %)(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77% 	110%	<p>한국은 2014년 이후(인구 %로서) 활동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가 1%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간 복합 성장률(CAGR) 2.3%를 밀도는 것이다. 한국은 ITU가 조사한 236개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고 있다.</p> <p>이로써 한국은(인구 %로서) 활동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에서 5위를 차지하고, 이 스코어카드 상의 본 지표에 대한 성장률에 있어서 24위를 차지하고 있다.</p> <p>[국제 전기통신 조합(ITU) 세계 전기통신/ICT 지표 데이터베이스(2016년 12월)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p> <p>주의: 이는 표준 이동통신 광대역과 대중 인터넷 전용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들의 총계를 말한다. 잠재적인 가입자가 광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핸드셋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실제 가입자들이 포함되며 잠재적인 가입자는 제외된다.</p> <p>아래에 표시된 이 OECD 수치는 2016년 6월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광대역 접속 형태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p> <p>OECD에서 한국은 인구 백분율로서 이동통신 무선 광대역 가입자에 있어서(35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했다. [OECD 광대역 가입자(2017년 2월) <www.oecd.org/sti/broadb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이동통신 광대역 가입자 수: 107.6% 이동통신 데이터 전용 가입자 수: 1.5% <p>총계: 109%(5천 5백 20만 명의 가입자 수로서 전체 OECD 가입자인 12억 1천만 명의 4.5%를 차지함)로서 2016년 6월 현재 OECD 총 평균 95.1%를 웃도는 수치이다.</p> <p>2015년 6월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이동통신 광대역 성장률은 2.35%(성장률에 있어서 35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로서 OECD 평균 성장률인 10.7%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치이다.</p> <p>주의: OECD는 2015년 7월부터 위성 및 고정 무선 범주를 이동통신으로부터 고정 광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정 및 이동통신 광대역에 대한 정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바 있다.</p> <p>주의: OECD 무선 광대역 수치에는 데이터 및 음성 가입자(표준 이동통신 광대역으로 칭함)와 데이터 전용 가입자(전용 이동통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p> <p>주의: 이 OECD 수치에는 이동통신 데이터 가입자가 포함되며, 이는 ITU 지표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p>
<p>9.4. 평균 이동통신 데이터 접속 속도(국가 당 초당 총 메가바이트(Mbps))(2017년 1/4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전체 국가의 평균: 11 Mbps 	12	<p>2017년 1/4분기에 한국의 평균 이동통신 데이터 접속 속도는 11.8 Mbps이며 아카마이(Akamai)가 측정한 70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p> <p>이로써 한국은 이 스코어카드 상에 기록된 평균 이동통신 데이터 접속 속도에 있어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p> <p>[아카마이(Akamai), 인터넷 상태(2017년 1/4분기) <www.akamai.com/us/en/about/our-thinking/state-of-the-internet-report>]</p>








www.bsa.org

BSA 세계 본부

미국, DC 20001, 워싱턴, 스위트 800,
NW, F 스트리트 20

 전화: +1.202.872.5500

 트위터: @BSAnews

 페이스북: @BSATheSoftwareAlliance

BSA 아시아-태평양

싱가포르 199555, 더 콘코스
#25-08 비치 로드 300

 전화: +65.6292.2072

 트위터: @BSAnewsAPAC

BSA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영국, SW1H 9EU, 런던
그라운드 플로어
페티 프랑스 65

 전화: +44.207.340.6080

 트위터: @BSAnewsEU